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정부인정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경수^{1*}, 황명구², 이태희³

¹선문대학교 교양학부, ²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³한양대학교 경영감사실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regarding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in Higher Education

Kyung-Soo Kim^{1*}, Myung-Ku Hwang² and Tae-Hee Lee³

¹College of General Studies, Sunmoon University

²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Planni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³Office of Management & Audit, Hanyang University

요약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개념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평가 모형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사업의 절차를 반영하여 정부인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단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및 33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recognition project regarding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in Higher Education.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model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process of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and develop the evaluation categories, items and indices for the model. The research has set the concept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regarding the program accrediting organizations and designed an evaluation model for such organizations. The evaluation model embraces a preliminary evaluation process, assessing an eligibility of the accrediting organizations for the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formalities set forth for the government recognition organization accrediting process. It also includes the main evaluation process, which assess the eligibility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stipulated in the associat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verification processes by experts, this research finalized 2 evaluation domains, 5 evaluation categories, 24 evaluation items and 33 evaluation indices.

Key Words : Accreditation, Evaluation, Program accrediting, Higher educ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기관과 학생 수는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서비스[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1980년 말 85개였으나 2011년 10월말 현재 201개의 4년제 대학과 146개의 전문대학이

*교신저자 : 김경수(kskim01@sunmoon.ac.kr)

접수일 11년 11월 16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15일, 2차 11년 12월 26일)

계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설립되어 있다. 또한 대학생 수도 1980년 402,979명에서 2010년 말 현재 3,352,514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급격한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대학 내부의 반성과 함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인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국가 간 고등교육의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 보증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사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한 대학운영에 대한 기관평가를 도입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중심으로한 학문분야평가 등 대학에 대한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자체적인 질 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대학평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08년 2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외부평가인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인정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연구수준 향상 및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가 요청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학과(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정부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기준, 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모형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고등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을 탐색한다. 둘째,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탐색한다. 셋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모형을 설계한다. 넷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접,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2.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의 고찰

2.1 평가인증의 개념

평가인증(accreditation)이란 어떤 교육기관이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일정한 준거나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이란 이러한 인정절차를 전문가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 공표하는 절차이다. 최근 각국은 이러한 평가인증기관에 대하여 민간 평가인정기구 또는 정부에 의한 인정(recognition)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정은 민간 평가인정기구 또는 정부가 평가인증기관의 적격성, 행·재정적 역량, 인증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인증제도 시행 목적은 교육기관이나 특정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일정한 수준의 질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하는데 있다[3].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증제도 시행 목적은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가며, 교육내용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하여 등가성을 보장함은 물론,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화, 문서화, 명확한 공개화를 통하여 외형적인 교육지표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를 진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4].

2.2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학문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과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요구되는 일정한 준거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 및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증(accredit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대학 스스로 자체평가와 함께 외부의 질 보장기관들에 의한 평가인증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고등교육법 제11조2를 개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

였다.

대학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그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Eaton은 대학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고등교육의 질보장, 정부와 사회기관의 재정지원 확대, 학점 및 학위 등의 질보장으로 교육 이동성 용이, 고용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5].

2.3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의 유형 및 변천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관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인증하는 것이며, 프로그램 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분야 등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 인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소속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시행하여 왔으나, 평가인증(accreditation)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evaluation)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2월 29일 고등교육법 11조 2의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제는 2010년부터 먼저 기관평가인증대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진행되었다.

2.4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시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평가인증제도에 정부인정제도가 도입되어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별 평가인증기관은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필두로 2010년 10월 현재 모두 8개의 평가인증기관이 설립되어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2011년 11월 인정받은 한국간호평가원을 제외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건축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무역교육인증원, 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있다.

3. 미국, 일본, 유럽연합 고등교육 프로그램인증기관 인정 기준

대학종합평가인증제를 최초로 실시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평가준거 설정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13년 북중미학교협의회(North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CACS)가 최초로 기관평가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정량평가 모형을 활용했으나, 최초 대학종합평가 편람을 발간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평가준거 설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평가준거는 해당 대학과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고등교육평가원(Quality Assurance Agency: QAA)이 미리 설정한 평가준거들(the Code)을 참고하여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준거를 설정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기준협회(The 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JUAA)는 평가준거를 필수항목(A군), 권장항목(B군), 선택항목(C군)으로 구분하여 대학의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6].

3.1 미국의 평가인증 기준

미국 연방교육부는 인정을 원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기준과 관련 요건은 첫째, 인증기준 설정 영역, 둘째, 인증 의사결정 메카니즘, 셋째, 인증기준 부적합에 대한 조치, 넷째, 인증기준 검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인증기준 설정 영역에 있어 인증기관은 첫째, 대학의 미션, 과정 이수정도, 주정부의 자격고사 합격률, 취업률 둘째, 교육과정 셋째, 교수 넷째, 교육시설과 장비, 교재 다섯째, 규정된 운영기준에 적합한 재정적·행정적 역량 여섯째, 학생지원 서비스 일곱째, 학생 충원 및 입학, 학사일정, 출판물,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여덟째, 프로그램의 기간, 수여 학위 또는 자격의 목적 아홉째, 인증기관에 접수된 학생 불만 기록 열째, 고등교육법 Title IV에 규정된 대학의 프로그램의무화 정도 등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연방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기관 중 광역 및 국가범위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의 주요 준거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7].

[표 1] 미국 연방교육부의 평가인증 기준[8]

[Table 1] USDE's Recognition criteria

인증 영역	주요 기준
기본적 적격성 요건	①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② 인증의 지역적 범위
	③ 인증 실적 및 경험
	④ 피인증 기관, 프로그램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
조직 및 행정요건	① 목적 및 조직
	② 행정적 재정적 기준
인증기준과 적용	① 인증기준 설정 분야
	②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
	③ 인증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
	④ 인증기준 강제 유지 제도
	⑤ 기준의 검토
인증 운영정책 및 절차	① 실질적인 변화
	② 운영 절차
	③ 인증결정 통지
	④ 인정기관에 대한 필수 제출 정보
	⑤ 주(州) 관련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고려

3.2 일본의 평가인증 기준

인증평가기관이 되려는 평가기관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대학 대학평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첫째, 대학설치기준, 대학통신교육설치기준, 대학원 설치기준 및 전문대학원 설치기준에, 그리고 단기대학에 관한 것은 단기대학 설치기준 및 단기대학 통신교육 설치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하며 둘째, 대학평가기준에 특색 있는 교육연구 진전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대상인 대학을 평가하는 관련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셋째, 대학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안을 공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평가방법에는 대학 스스로의 점검 및 평가결과 분석과 대학 교육·연구활동 등의 상황에 대한 현지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인증기준으로 교육·연구상 기본 조직, 교원조직,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사무조직, 재무, 기타 교육·연구활동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증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는 첫째, 대학 교원 및 그 외의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에 관해 식견을 갖고 있는 자가 인

증평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대학 교원이 그 소속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연수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 인증평가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경리와 인증평가업무 경리와는 구분해서 정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타 인증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는 첫째,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169호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며 둘째, 대학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해당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대학 교육·연구활동 등의 평가실적이 있을 것과 공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증평가를 실시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7].

3.3 유럽연합 지역의 평가인증 기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지역의 경우 유럽고등교육질 보증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NQA)에서 외부 질 보증 기관(external quality assurance agencies) 기준으로서 8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ENQA는 2009년 발표한 ‘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내부 질 보증 및 외부 질 보증, 외부 질 보증 기관에 대한 유럽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바 있다.

그 중 외부 질 보증 기관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첫째, 고등교육을 위한 외부 질 보증 절차의 사용 둘째, 법적 요건의 충족 및 정부인정 셋째, 정기적인 외부 질 보증 활동 경력 넷째,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 보유 다섯째, 사명선언서 보유 여섯째, 독립성 유지 일곱째, 외부 질 보증 준거 및 절차의 공표 및 준수 여덟째, 책무성 준수 절차의 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연합 각국은 이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권고된다[9].

4.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평가모형 개발

4.1 평가모형의 이론적 고찰

평가준거 모형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최상위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각각의 평가준거별로 하위 평가준거를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설정된 하위 평가준거에 대한 하위 평가준거를 다시 설정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다. 또 하나는 최하위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요인분석 등의 방식에 의해 차상위 평가준거를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설정된 차상위 평가준거의 차상위 평가준거를 다시 설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다[6].

본 연구에서 평가준거 모형 설정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탑-다운방식이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사업의 절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4.2 평가모형 설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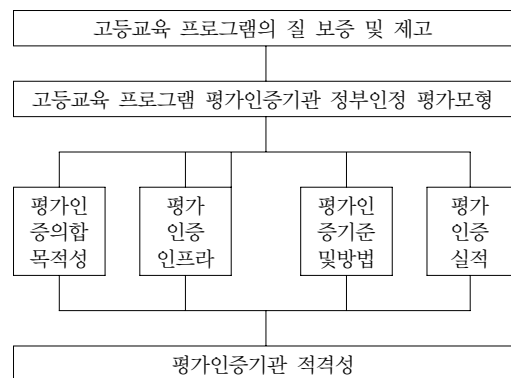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의 바람직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특성이 고려된 최적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행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면접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수시면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한 검토 등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2009년도 고등교육 기관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지표 설정 및 실제 평가에 참여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공무원 6명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총 18명이었으며, 면담문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담당 공무원 6명의 성별은 남성 1명, 여성 5명으로 30대 5명, 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전문대학원 설립 평가 업무, 대학 평가인증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민간 전문가 12명은 남성 11명, 여성 1명으로 40대 2명, 50대 10명이었다. 이들은 전문대학원 설립 평가위원, 평가인증기관 사업책임자,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평가위원, 대학설립 평가위원, 보건의료분야 평가위원, 보육시설인증 평가위원, ISO 인증 평가위원, 정부부처 자체평가위원 등을 수행한 바 있었다.

참여관찰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평가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고등교육 기관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시 참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평가모형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관계자 등과의 5회에 걸친 토론회 및 자문 등을 거쳐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세부평가

모형을 도출하였다.

4.3 평가모형 설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기관 지정사업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기관 지정사업의 선순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단계를 거쳐,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1] 정부인정 평가모형

[Fig. 1]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recognition

한편,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정부인정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 및 하위 평가지표들은 선행연구자들의 인증평가 모형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그 관련성에 따라 구성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4.4 평가모형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 설정

예비평가영역은 평가인증기관의 적격성 부문으로, 본 평가영역에서는 평가인증의 함목적성부문,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부문, 그리고 평가인증 실적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모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33개 평가지표로 구분하였다.

4.4.1 예비평가

예비평가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이 정부인정을 받

기 위한 적격요건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정부인정 평가를 수행하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요건으로는 평가인증기관의 설립 형태, 평가인증 실시요강, 평가인증 실적을 적격요건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평가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부문의 평가지표
[Table 2] Evaluation Indices of Qualifications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 지표
예비 평가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평가인증기관의 설립 형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비영리법인
		평가인증 실시요강	③ 평가인증 실시요강구비
		평가인증 실적	④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평가인증 또는 자문 수행

4.4.2 본 평가

4.4.2.1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정기준은 본 평가영역 중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부문의 충족요건으로서 첫째,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인증이 사회적으로 필요함을 충분히 입증할 것 둘째, 평가인증의 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부합하여야 하며, 평가인증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타당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 셋째,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관이 이러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전문분야 또는 자격제도와와의 연관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평가인증제도의 인증기준, 심사방법, 절차가 객관적으로 설정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실행 가능한지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 목적의 정책적 부합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평가인증의 목적이 평가인증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의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평가인증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수립된 추진전략이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부문

의 평가항목은 평가인증 필요성, 평가인증의 목적, 평가인증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하위 평가지표는 표 3과 같다.

[표 3]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부문 평가지표
[Table 3] Evaluation Indices of Compatibility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본 평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필요성	① 평가인증 필요성
		평가인증 목적	② 정책적 부합성 및 목적의 타당성
		평가·인증 추진전략	③ 추진전략의 적절성

4.4.2.2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인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의 기준은 평가인증기관의 조직 관련 기준 과 평가인증기관의 재정 및 예산 관련 기준에 대하여 충족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충족요건 및 이에 따라 설정된 평가항목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4.4.2.2.1 평가인증기관의 조직 관련 기준

인정기준은 먼저 평가인증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첫째, 평가인증기관은 권위와 대표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해당 학문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 관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는 해당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충분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을 위한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인증기관은 효율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국제화와 관련하여 평가인증기관이 평가인증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재정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고, 평가인증 관련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와 평가인증기관의 내부조직체계가 평가인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계로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공인된 평가인증기구와의 정보 교

류 및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정도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분야 대표성과 관련하여 평가인증기관의 최종의사결정기구가 해당 학문분야를 대표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평가인증기관의 최종의사결정기구로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다. 셋째,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판정위원회가 해당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경력,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들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울러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위원 풀 구성 및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평가위원 풀이 해당 학문분야를 평가하기에 양적으로 충분하며,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영역, 경력, 지역, 성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평가위원풀이 평가위원 소관 평가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가위원 풀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을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함에 있어 자격요건, 제척, 이해관계자 배제 제도 등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이 적절하고 교육 및 훈련 자료가 충실히 구비되어 있으며, 연수프로그램이 운영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담 상근 지원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평가인증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상근직원의 수가 적절한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만약 전담 상근직원의 수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상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중 평가인증기관의 조직 관련 기준 평가항목은 평가인증 조직체계, 인증판정위원회, 평가위원, 평가인증 지원조직으로 설정하고, 하위 평가지표는 표 4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4.4.2.2.2 평가인증기관의 재정 및 예산 관련 기준
인정기준은 평가인증기관의 재정 및 예산 등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첫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적절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야 하며, 공정한 평가인증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것 둘째, 평가인증기관은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규정 및 인력을 갖추고, 평가인증사업 회계는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자체 회계감사 및 공인된 회계 법인에 의한 결산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것 셋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을 위한 적절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인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 평가인증예산의 편성기준과 절차가 적절한지 셋째, 회계와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담당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평가인증사업 회계가 타 사업 회계와 구분되어 있고 자체 회계감사 및 공인된 회계 법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지, 넷째, 편람기준 개발비, 서면 평가비, 현지방문 평가비, 평가결과 조율회의비, 평가결과 보고서 집필비, 인건비 등 평가인증에 관련된 수수료의 구성 항목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항목별 산출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중 평가인증기관의 재정 및 예산 관련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평가인증 재정, 평가인증 회계, 평가인증 수수료로 설정하고, 하위 평가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의 평가지표
【Table 4】 Evaluation Indices of the Evaluation Accrediting Infrastructure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본평가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조직 체계	①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전문성·국제화
			②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분야 대표성
		인증판정위원회	③ 인증판정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평가위원	④ 평가위원 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⑤ 평가위원 풀 관리체계의 적절성
		평가인증 지원조직	⑥ 전담 상근직원의 확보 및 전문성
		평가인증 재정	⑦ 재정 운영의 적절성 및 독립성
		평가인증 회계	⑧ 회계의 투명성
평가인증 수수료	⑨ 수수료 산정의 적절성		

4.4.2.3 평가인증기준 및 방법 부문

인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기준 및 방법 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충족요건 및 이에 따라 설정된 평가항목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4.4.2.3.1 평가인증기준

인정기준은 첫째,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기준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유지하고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견지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평가인증 대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평가인증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평가인증기준의 내용이 해당 프로그램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정되어 있으며, 평가인증을 위하여 학교가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적절하게 요구되고 있는지 넷째, 평가인증기준의 충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섯째,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학교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중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기준 관련 평가항목은 평가인증기준 설정 원칙, 평가인증기준의 내용,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으로 설정하고, 하위 평가지표는 표 5와 같다.

4.4.2.3.2 평가인증방법

인정기준은 평가인증방법으로써 첫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구비하고,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 주기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평가단계별로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둘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위원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평가인증 기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인증 주기와 평가인증 종류별 유효기간이 평가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둘째,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신청서 양식과 작성지침이 적절한지와 인증신청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평가 담당자에 대한 연수 계획이 적절하며 그 연수계획 시행실적이 충실한지, 셋째,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위한 평가기간 및 절차가 적절한지와 서면평가보고서 양식이 충실하게 개발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지방문평가 시 평가대상학교와 의사소통 절차가

적절한지, 넷째, 프로그램간, 대학간, 연도간 평가결과의 조율 등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절차를 구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적절한지, 다섯째, 평가인증 판정기준이 타당하고 명확하며, 평가인증결과 확정 전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의견제출 등 평가인증 판정절차가 적절한지, 여섯째, 평가위원이 평가 이행과정에서 내외부의 평가 저해요소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하고,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구비되어 있으며, 평가인증과 관계된 인증신청서, 평가단계별 평가기록 및 평가인증 판정자료 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일곱째,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범위가 적절하며,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가 적절하고, 이의신청기간 부여, 신청 접수 및 처리, 재심위원회 구성 운영 등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적절히 운영되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 인프라 부문 중 평가인증방법 관련 평가항목은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 및 절차, 평가인증 이행,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으로 설정하고, 하위 평가지표는 표 5와 같다.

【표 5】 평가인증기준 및 방법과 부문 평가지표
 [Table 5] Evaluation Accrediting Criteria and Method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본 평 가	평가 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기준 설정 원칙	①평가인증기준의 합목적성 및 대상 학문분야의 특성 반영
		평가인증기준의 내용	②평가인증기준 내용의 적절성
			③평가인증기준 충족정도 판단기준의 타당성
		평가인증기준의 변경	④평가인증기준 결정 및 변경 절차의 적절성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 및 절차	⑤평가인증 주기 및 유효기간 설정의 적절성
			⑥인증신청서 작성 지원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⑦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의 적절성
			⑧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
			⑨평가인증 판정의 적절성
		평가인증 이행	⑩평가인증과정의 공정성 확보
평가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⑪평가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의 적절성		

4.4.2.4 평가인증 실적

인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실적 기준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실적과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기준으로 충족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충족요건 및 이에 따라 설정된 평가항목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인정기준은 평가인증 실적 기준으로서 평가인증기관은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예비평가영역의 적격성 검토 기준으로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특성상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은 물론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실적이 양적으로 충분하며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실적이 평가인증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 실적 및 활용 부문 중 평가인증 실적 관련 평가항목은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으로 설정하고, 하위 평가지표도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정부인정을 위한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Table 6]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ices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 지표	
예비평가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평가인증기관의 설립 형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비영리법인	
		평가인증 실시요강	③ 평가인증 실시요강 구비	
		평가인증 실적	④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평가인증 또는 자문 수행	
본평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필요성	① 평가인증 필요성	
		평가인증 목적	② 정책적 부합성 및 목적의 타당성	
		평가인증 추진전략	③ 추진전략의 적절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조직 체계	평가인증 조직 체계	①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전문성·국제화 ②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분야 대표성
				인증관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④ 평가위원 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⑤ 평가위원 풀 관리체계의 적절성
				평가인증 지원조직
평가인증 재정	⑦ 재정 운영의 적절성 및 독립성			

영역	부문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인증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회계	⑧ 회계의 투명성		
		평가인증 수수료	⑨ 수수료 산정의 적절성		
	평가인증기준 설정 원칙	평가인증기준의 내용	평가인증기준 설정 원칙	① 평가인증기준의 합목적성 및 대상 학문분야의 특성 반영 ② 평가인증기준 내용의 적절성 ③ 평가인증기준 충족정도 판단기준의 타당성	
				평가인증기준의 변경	④ 평가인증기준 결정 및 변경 절차의 적절성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 및 절차
		평가인증 이행	⑩ 평가인증과정의 공정성 확보		
		평가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⑪ 평가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의 적절성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	평가인증 실적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	

4.5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증

이상과 같이 도출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전원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5점척도로 구성된 설문은이메일을 통해 2011년 2월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전원이 응답하였다. 평가전문가들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평가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지표가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정한 중앙값(3.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10].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균값은 최저 3.73점에서 최고 4.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대부분의 평가지표 최저 0.5504에서 1 미만의 값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평가인증 또는 자문 수행' 지표가 1.135점, '평가인증 필요성' 지표가 1.003점으로 나타났으나 수치를 볼 때 표준편차로 인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기타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내용타당성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7] Average Appropriateness and Standard Deviation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균	표준 편차
평가인증기관 설립 형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37	0.850
	비영리법인	4.37	0.850
평가인증 실시요강	평가인증 실시요강 구비	4.50	0.777
평가인증 실적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평가인증 또는 자문 수행	3.77	1.135
평가인증 필요성	평가인증 필요성	4.40	1.003
평가인증 목적	정책적 부합성 및 목적의 타당성	4.37	0.999
평가인증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적절성	4.24	0.988
평가인증 조직 체계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전문성·국제화	4.30	0.596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분야 대표성	4.57	0.626
인증판정 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4.63	0.669
평가위원	평가위원 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4.37	0.718
	평가위원 풀 관리체계의 적절성	4.27	0.583
평가인증 지원조직	전담 상근직원의 확보 및 전문성	3.90	0.885
평가인증 재정	재정 운영의 적절성 및 독립성	3.73	0.944
평가인증 회계	회계의 투명성	4.00	0.743
평가인증 수수료	수수료 산정의 적절성	3.93	0.691
평가인증기준 설정원칙	평가인증기준의 합목적성 및 대상 학문분야의 특성 반영	4.47	0.571
평가인증기준의 내용	평가인증기준 내용의 적절성	4.57	0.504
	평가인증기준 충족정도 판단기준의 타당성	4.60	0.563
평가인증기준의 변경	평가인증기준 결정 및 변경 절차의 적절성	4.30	0.651
평가인증 주기와	평가인증 주기 및 유효기간 설정의 적절성	4.27	0.740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균	표준 편차
유효기간 및 절차	인증신청서 작성 지원의 적절성 및 충실성	3.97	0.615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의 적절성	4.37	0.809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	4.57	0.626
	평가인증 판정의 적절성	4.37	0.615
평가인증 이행	평가인증과정의 공정성 확보	4.57	0.626
평과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인증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의 적절성	4.20	0.551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	3.97	0.615
사회적 수용도 및 활용도	사회적 수용도	3.80	0.761
	사회적 활용도	3.90	0.845
프로그램의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4.23	0.568
평가인증 결과 환류	평가인증제도 관리 및 개선 노력	4.23	0.728

평가부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각 부문별 내적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은 표 8과 같다. '평가인증기관 적격성'을 제외한 평가부문이 0.8 이상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평가인증기관 적격성'은 Cronbach's α 계수는 0.456을 보였다.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부문은 0.6에 미달하였으나 적격성의 요건이라는 특성상 내적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를 다시 구성해야 할 만큼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 8] 평가부문의 내적일관성
[Table 8] Inner Consistency of the Evaluation Category

평가부문	Cronbach's α
평가인증기관 적격성	0.456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0.926
평가인증 인프라	0.868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0.907
평가인증 실적	0.809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1 결론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기관 지정 사업 중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지정을 위한 평가모형을 설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등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에 적합한 개념을 설정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진 평가항목 및 특성들과 현행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기준, 절차와 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기관 지정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단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의 과정으로 평가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및 33개 평가지표를 본 연구의 실질적인 평가모형으로 설계하였다.

각각의 평가영역별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예비평가영역에는 평가인증기관의 적격성부문으로서 평가인증기관의 설립형태, 평가인증 실시요강, 평가인증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본 평가영역에서는 평가부문을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으로 설정하고,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평가인증의 합목적성부문에는 평가인증 필요성, 평가인증 목적, 평가인증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평가인증 인프라부문에는 평가인증 조직체계, 인증판정위원회, 평가위원, 평가인증 지원조직, 평가인증 재정, 평가인증 회계, 평가인증 수수료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부문에는 평가인증 기준 설정 원칙, 평가인증기준의 내용, 평인증기준의 변경,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 및 절차, 평가인증 이행, 평가인증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평가인증실적부문에는 평가인증 실적의 양과 충실성, 사회적 수용도 및 활용도, 평가인증 결과의 환류를 각각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선행연구 모형 및 현행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평가 단계별 특성을 추출하여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가 시작된 기간이 1년 남짓 경과하여 이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소 1개 기관 이상에 대해 정부인정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정부인정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평가인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참여한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

References

- [1] Educational statistics & information in <http://std.kedi.re.kr>
- [2] Current States of Higher Education's Evaluation Accrediting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 [3] JongYoul Park, HoSoon Bae, YoungHo Lee, [Theory and Reality of University Evaluation], pp.50-53, 2009.
- [4] ByungSeon Kwak, HoSoon Bae, MyungSoon Park, JoongSoon Lee, JeongPyo Lee. Diagnosis of Vocational College's Department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 Research, 2007
- [5] Eaton, Judith S., Accreditation and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 Practice and Pressures, 2002.
- [6] Lee, Young-Hak, Development of Criteria Model for Institutional Accreditation based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2007.
- [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of University Achieve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 Structure Improvement Research, 2008.
- [8] Lee Young Ho, Kim Sun Nam, A study of the recognition system for the accreditation institution of University evaluation initiated by USDE, 2005.
- [9] 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NQA,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2009.

[10] ByeongCheol Kim [Theory of Meta Evaluation],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2009.

김 경 수(Kyung-Soo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1997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일반, 평생교육, 고등교육평가

황 명 구(Myung-Ku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학박사)
- 1999년 2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2011년 5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관심분야>

고등교육 평가인증, 국가 R&D 평가

이 태 희(Lee Tae Hee)

[정회원]



- 2007년 8월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0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경영감사실 과장
- 2009년 12월 ~ 현재 : 교과부 기관평가인증심사소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경영학(전략, 인사조직), 대학평가